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법」 제정(‘26.3.5.)·시행(‘26.7.1.)예정으로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시행령에 대하여 일괄개정 추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의 개정)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2조(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」의 개정)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3조(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3조(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·공람 등) ① ~ ④ (생략)	제143조(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·공람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 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<u>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지역방호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)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방호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4조(지역방호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) ①----- ----- -----.
1. 해당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행정부시장(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(1)부시장을 말한다)·행정부지사	1. 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----- ----- ----- --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(이하 “지역방사능방재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	제21조(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	----- --- <u>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
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원자력안전협회의의 기능 및 구성) ①·② (생략) ③ 안전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. 1. 당연직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가.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로 하며,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 및 해당 시·군·구를 관할하는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주변지역관할시·도”라 한다)에 소속된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	제9조(원자력안전협회의의 기능 및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----- 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나. · 다. (생 략) 2. (생 략) ④ ~ ⑧ (생 략)	나. · 다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④ ~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	
연 락 처	(02) 397 - 7383